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목 차****■ 건설관련 소식 1**

- 경남도 서울서 투자유치설명회..... 12개사와 3,423억 원 투자협약 체결
- 중국 국오그룹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의향서 제출
- 경남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초기대응 체계 점검
- 경남도, 재난관리 일원화로 도민 인명·재난보호 역할 '특특'
- 경남도 싱크홀 특별안전점검 결과 '안전'
- 자전거 타고 전국 돌며 안전문화 확산 홍보
-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서
- 올해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일제 실시
- 남부내륙철도 성공 추진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 지식정보 9

- 접도구역 절반 줄이니 여의도 18배 땅 불편 해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도한 조건 부과 이제 그만 ~
-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국민 관심 지대!

- 주관적 건축심의를 사라지고.....기준과 절차는 투명해지고
-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
- 순환골재 품질인증 "수월"..... 부담적고 간편해져
- 건설분야 가치공학(VE) 경진대회 접수 시작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
-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 인간과 환경과 호흡하는 녹색건축이 눈앞에!
- 신뢰성 있는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틀 마련
-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에서 구직기회 잡아요!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 인하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25**■ 신기술 정보 30****■ 건설기술심의 현황 32****■ 계약심사 현황 32****■ 기술인 나눔 정보 33**

건설관련 소식

경남도 서울서 투자유치설명회.. 12개사와 3,423억 원 투자협약 체결

▶ 16일 서울서 수도권 CEO 400명 초청,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 전개



투자협약 체결식

《2014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

경남도는 16일 10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수도권기업 CEO 등 잠재투자가 400여명을 초청하여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12개 업체 3,423억 원의 투자와 1,89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에 투자의향이 있는 수도권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경남도와 18개 시군,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도는 투자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경남의 투자환경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경남도와 MOU를 체결한 주요 기업을 분야별 살펴보면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인 해양플랜트 분야에 에스에이에스(주), 에스엠에이치(주)가 창원 가포지구에 597억 원을 들여 77,798㎡ 부지에 공장을 설립한다.

나노 관련기업인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주)피엔씨, (주)코사인은 밀양에 620억 원을 투자해 53,058㎡의 부지에 공장을 세운다.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인 (주)영화금속은 함안 일반산단에 300억 원을 투자해 36,502㎡의 공장을 짓고, 신화열처리, (주)센트랄CAS는 창원 대합산단에 366억 원을 들여 42,960㎡의 공장을 올린다.

특히 넥센타이어는 2009년 창원군 대합면에 1조원을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는 1,000억 원을 투자해 10만㎡의 공장을 증설하고 30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계획을 밝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 투자협약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기업은 일본 이바라기현에 소재한 (주)금농원연구소로 창원 가포지구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도내 농산물 수집 가공 및 물류센터를 설치한다.

이밖에 산업용밸브 제조회사인 조광아이엘아이(주)는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230억 원, 진주에 소재한 보트제작 업체인 (주)다요요트는 남해에 110억 원을 투자해 31,696㎡의 공장을 설립하고 이전하기로 했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경남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이 완성되면 경남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며, “경남에 투자하는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기업 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는 수도권 기업을 타깃으로 매년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신규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투자유치단 기업유치팀당
(055)211-3143

중국 국오그룹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의향서 제출

- ▶ 13일~15일 中 국오그룹 천지엔민 투자위원회
회장 일행 경남 방문
- ▶ 14일 홍준표 도지사 만나 투자의향서 전달



《중국 국오그룹 투자단 경남도 방문》

경남도는 진해 웅동에 추진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중국의 국영회사인 국오그룹의 천지엔민 투자위원회 회장 등 일행이 경남을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오그룹 천지엔민 투자위원회 회장 등 일행은 10월 13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지 방문, 도지사 면담, 사업 관계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10월 15일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국오그룹은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예정지 등 인근지역 현장방문 실사를 통해 시장가능성을 조사하고, 파트너로 일할 국내 개발업자들의 정보를 수집한다.

10월 14일 홍준표 도지사 및 도 투자유치단 관계자와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투자의향서를 전달한다.

투자의향서에는 구체적 추진방향 등 세부적인 투자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오그룹의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홍준표 도지사는 “상해 등 중국동부지역에서 국제공항·크루즈 등을 이용한다면 중국내 어느 지역보다 경남이 더 접근성이 뛰어나다.

시장성이 충분한 만큼 최적의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One Stop Service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국오그룹은 중국의 4대 국영 건설투자그룹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시설개발에 참여하였고, 중국 10개 주요도시에 국오촌(대규모 레저관광단지)을 건설한 대규모 건설 그룹이다. 또한 올해 7월 시진핑 주석이 방한 시 동반할 정도로 중국내에서는 국영기업으로서의 입지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도 글로벌 테마파크는 진해 웅동 지역에 약 2.85km²(86만평) 규모에 테마파크, 6성급호텔, 카지노, 국제회의시설, 프리미엄아울렛, 골프코스, 리조트, 수상스포츠 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레저관광단지 프로젝트로, 지난 8월 서울에서 미국의 폭스社, 호주의 빌리지 로드쇼社와 3자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미국의 유수 부동산투자개발사인 블레이크 필드사 알렉산드로 회장이 4박 5일간 오로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만을 위해 방문하는 등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 자료 : 도 투자유치단 글로벌테마파크담당
(055)211-3117

경남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초기대응체계 점검

▶ 지난 21일부터 3일간 국민 체감형 훈련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열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남도는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하여 초기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초기대응체계에 대한 점검훈련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골든타임 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날인 21일에는 재난 관련 13개 부서 전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오후에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가상하여 도 13개 협업부서와 경찰청 및 39사단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를 소집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문제해결형 토론훈련을 실시하여 유독물 방제작업과 비상급수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오전에는 창원경륜장 붕괴사고를 가상하여 교통통제, 인명피해 집계, 각종 물자·장비·인력 등 자원관리체계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오후에는 국민 체감형 훈련을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남해 유스호스텔에서 민·관·군 480여 명이 모여 화재대피훈련 등을 실시했다.

마지막날인 23일에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불시 메시지로 건축물 붕괴 재난상황에 대하여 자원봉사, 교통대책, 중장비동원, 재난심리지원, 의료 및 장례지원 등 각 분야별 조치방안 등 대응 능력을 점검 받았다.

이채건 경남도 안전건설국장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 매뉴얼 정비 등 실제 재난이 발생할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보완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난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시회재난담당 (055)211-3163

경남도, 재난관리 일원화로 도민 인명·재난보호 역할 '톡톡'

-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 ~ 10.15) 종료에 따른 성과분석
- ▶ 도민 안전종합대책 마련, 안전예산 증액, 신속한 재난대응 등 효과

경남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재난관리 추진성과를 22일 발표했다.

먼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안전한 경남' 실현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수립했다.

도민 종합안전대책 추진계획(5대 전략 14개 과제)과 사회재난 대응 역량강화 방안(통합 초기대응 매뉴얼 작성 등)을 수립 했으며,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는 전부개정(11월 도의회 정례회 상정) 예정이다.

또 선제적 재난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재난대응 역량과 재난대비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확대수립(35개분야 → 58개분야), 반복적 훈련을 통한 재난대비(대응) 역량강화 5회(실행 및 토의훈련)실시,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민반공·재난예경보시설 통합 및 서비스, 2018년 완료)을 했다.

재난안전분야 예산은 재난취약분야 안전성 확보와 도민안전 증진을 위하여 올해 올해 4,255억 4,300만 원이며, 내년도는 전년 대비 11.6% 증가된 4,803억 600만 원을 요구했다.

재난지원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난피해자 생활안정화 도모를 위해 재난피해자 지원(심리치료)시스템 운영(77명), 풍수해 재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주택 28,573가구, 온실 3,502천㎡ 가입)하였으며, 조례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기준도 마련(주택, 생계지원금 등) 계획이다.

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주요성과를 분석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을 보면 연 평균 9.4개가 발생하여 그 중 1.7개가 도에 내습하여 연 평균 6.2명의 인명피해와 6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여름에는 태풍 '나크리', '8.17~21, 8.25.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우리 도에 총 780건 3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재난피해에 비해 인명·재산피해가 줄었다.

또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했다.

'거제 해금강 해상 어선충돌사고'의 신속한 상황전파 및 피해 최소화, 태풍 '나크리', '8.17~21, 8.25. 집중호우' 조기 재대본 운영 및 재난대응, '8.25 호우' 피해지역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 창원시·고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받았다.

특히, 도 안전건설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으로 모든 자연·사회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재난관련부서, 유관기관과의 협업기능 강화로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의 인명·재산피해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채건 경남도 안전건설국장은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철저한 사전 대비 및 선제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도민의 재난피해와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사회재난담당
(055)211-4533



경남도 싱크홀 특별안전점검 결과 ‘안전’

- ▶ 1개월간 도내 지하매설물, 도로시설, 대형 건축공사장 대상 특별안전점검 실시
- ▶ 특별점검 결과 소규모 지반침하 5건 발견 신속히 복구완료



《창원 성산구 반림동 일원》

경남도는 최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됨에 따라 도민 불안감 해소와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9월 16일 ~ 10월 15일, 1개월)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대 지하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도로시설, 16층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경남도 5개 관련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KT, 한전, 경남에너지 등) 700여 명이 참여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상수도(관로 9,753km, 정수장 50개소), 하수도(관로 1,252km), 전기(지중관로 2,200km), 가스(도시가스배관 2,392km, LPG집단공급시설 156개소), 통신(통신구 13개소, 맨홀 39,565개소), 난방(열공급시설 104km), 도로시설(도로 8,274km, 교량·터널 1,609개소, 공사장 28개소), 대형 건축공사장(42개소) 이다.

도는 점검결과 대형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하수관로 손상, 상수도 맨홀 주변 다짐불량 등에 따른 소규모 지반침하(직경 1m, 깊이 1m 이하)가 5건 발견되어 신속히 복구 완료했다.

도는 앞으로 싱크홀 주요 원인인 지하매설물 노후와 손상, 지하굴착공사 후 시설물 주변의 다짐 관리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매설물 허가부서의 공사 지도 감독 강화와 지하매설물 이력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싱크홀(지반침하) 세부 예방대책’을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인모 경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8,147개소 대해서도 매월 정기점검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당
(055)211-4527



자전거 타고 전국 돌며 안전문화 확산 홍보

- ▶ 19일 창원시 상남시장에서 ‘안전엽서 쓰기’ 캠페인
- ▶ 20일 경남도청에서 출발, 자전거로 전국 순회 안전문화운동 전개

경남도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는 19일 오후 4시 30분 창원 상남시장 주변에서 소속 회원 60명과 지역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회원 그리고 경남도 공무원들과 더불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전엽서 쓰기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전엽서 쓰기 행사 참가자는 생활 속 안전을 위해 작은 실천을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는 엽서를 쓰고, 작성한 엽서는 이메일 및 문자로 연말에 자기 자신에게 전달되어 약속을 확인하는 형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자전거를 타고 전국 주요 광역시·도 주요도시를 돌며 진행되며, 안전행정부, 국민대통합위원회, 안전문화중앙협의회가 후원한다.

회원들은 창원시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20일 오전 9시에 경남도청을 출발하여 다음 행선지인 부산시로 출발한다.

이후 24일까지 울산~대구~안동~춘천~서울시청 등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구인모 경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행사가 세월호 사고 이후 도덕성 회복, 안전 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의미에서 기획됐다”며, “앞으로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055)211-4514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생활안전지도’ 에서

- ▶ 11월 23일까지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
- ▶ 내년도 생활안전지도 제공 서비스 전 시·군으로 확대

생활 속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클릭 한 번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지난 9월 30일부터 공개되어 거창군을 포함하여 전국 15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에 있다.

생활안전지도는 도민생활과 관련된 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 4대 분야에 대해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지도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치안분야는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의 발생빈도에 따라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표시해 해당지역의 위험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분야는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재난분야는 산사태, 화재 등의 발생빈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며,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범죄와 교통정보가 담긴 맞춤형 안전지도를 제공한다.

오는 12월에는 창원,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남해, 하동 8개 시·군에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더욱 편리한 지도를 만들기 위하여 10월 23일 ~ 11월 23일까지 생활안전지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다.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생활안전지도 개선 아이디어나 활용사례 등을 텍스트, 도면, 그래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www.ndmi.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055)211-4517



올해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일제 실시

▶ 16일 오전 7시 지방도 47개 노선 215개 지점에서 조사 실시

경남도는 도로의 계획, 건설,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올해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를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량 일제 조사는 도내 지방도 47개 노선(국가지원지방도 7, 일반지방도 40)에 215개 지점(국가지원지방도 40, 일반지방도 175)에서 실시된다.

도는 교통소통에 저해가 없는 길 가장자리 안전한 장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도로 시점에서 종점을 향해 우측은 상행, 좌측은 하행으로 구분하여 12종의 차량으로 분류, 시간별로 통행량을 조사한다.

이번 교통량 조사에 앞서 지난달 19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시도와 시군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방법, 자료 입력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별로 조사원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도내 대학생과 주부 등을 조사원으로 구성하여 유희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1,847명, 8,324만 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이번 교통량 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교통량 조사 관측소를 통과할 때 차량을 서행 운전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4676



남부내륙철도 성공 추진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 ▶ 29일 오후 3시 통영 마리나리조트 관계자 200여 명 참석 정책포럼 열려
- ▶ 남부내륙철도는 경남 미래 50년 성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를 위한 정책포럼〉

남부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남북내륙철도 정책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의 신성장동력산업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남부내륙철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0월 29일 오후 3시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경남도 주관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하며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조문환 경남발전연구원장, 김기혁 대한교통학회장, 강승필 서울대 교수,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동훈 한국철도시설공단 미래사업기획처장을 비롯해 관계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남부내륙철도는 서부경남은 물론 경남의 미래 50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남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는 ‘남부내륙철도 완성을 위한 서부경남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부내륙철도는 서부경남 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누락된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과 서울~김천 구간의 철도이용편익 등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삼 경남도 항공우주산업과장은 “남부내륙철도는 앞으로 경남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현재 건설 중인 함양~울산 간 내륙고속도와 연계로 영·호남 교통망 구축을 통해 물류개선과 세계적인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5조 7,8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에서 거제까지 총 170.9km의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진주 2시간 10분대, 서울~통영 2시간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19일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재 KDI에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 8월에 1차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서울(수서)~김천구간의 철도이용 편익반영 누락, 진주·사천 국가항공산업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등 철도노선 경유 인근지역의 산업단지와 택지 등 각종 개발계획의 미반영, 지역 관광수요의 미반영,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KDI에 강력하게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 자료 : 도 항공우주산업과 남부내륙철도담당
(055)211-6423

접도구역 절반 줄이니 여의도 18배 땅 불편 해소

▶ 접도구역 규제개혁……건축물 증·개축 토지 이용 활성화 기대

(사례 1) 00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K씨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소유토지의 70%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실행하지 못함

→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20→10m)로 소유한 대부분의 토지가 해제되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도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사례 2) 시골지역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P씨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증·개축하려 했으나, 접도구역 규정상 불가능

→ 군도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되어,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그 간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이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①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②지정제외 대상 확대, ③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²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 접도구역 해제 면적 : 51.76km²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km²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km²의 약 5배에 해당

-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의 연장은 약 2,782km로 제도개선으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해당하는 27.82km²

③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m²→30m²)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476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도한 조건 부과 이제 그만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 적용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예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전방안 제시 필요)하여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하였다.

또한,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되었다.

< 사 례 >

- ▶ ○○시에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요구로 사업시행자 부담을 가중
- ▶ ○○사업자는 심의 작성에 필요한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가 없어 공사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관련자료 미비로 재심의·조건부 가결 결정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①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로 차별화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②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도록 하였고

* (중전) 원안 의결(가결), 조건부 의결 등 → (개선)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등

③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체로 공모·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나 비수도권 지역 및 50만 이하 시·군인 경우에는 거리적인 문제, 지역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 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분야별 전문가 확보 곤란, 위원의 전공과 심의 분야 간 불일치 등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에 대한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의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사례 >

- ▶ ○○시장은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도시계획위원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건축위원으로 위촉
- ▶ ○○시는 자치단체장 등 내부 인사와의 친분관계자를 내부 추천형식을 빌려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하게 된다.

①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은 구체화*하였다.

*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道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검토 사항, 의견제시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심의는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잘못된 심의 사례 및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여 과도한 심의를 예방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①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녹취록은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표준화된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② 부결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체적 부결사유를 기재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토록 하고,

③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7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 국민 관심 지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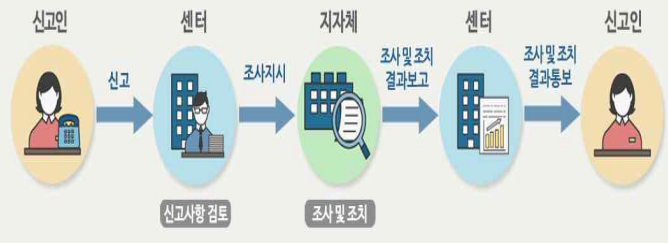
▶ 9월 한달 96건 접수, 11건 조사완료, 85건 진행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1건은 지자체 조사 완료, 나머지 85건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하여 정부의 강력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공사용역 계약 비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부적정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과 이와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센터(센터장 : 주택건설공급과장)를 설치·운영하게 된 것이다.

신고 후 업무처리 절차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신고내용별 유형 2014. 9. 1.-30 (총96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다양한 불만과 관리비리 해소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11건이며, 내용을 보면,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이다(복합내용 포함).

* 지자체 조사완료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불임(참고 3)

다만, 11건에 대한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센터가 직접 알려주고 있다.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입주민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완전 해소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아파트 관리비 관행 개선》

-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13.12 법, ‘14.4 시행령)
- * (‘15.1.1 시행) 300세대 이상 단지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 * (‘14.6.25 시행)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전자투표제 시행,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의무교육,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비리자 처벌 강화 등
-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 감소와 시설관리 지원을 위한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4.4.8)
- 아파트 관리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간 비교를 통한 관리비 등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비등 공개항목 확대(27→47개, ‘14.6)

또한, 정부는 아파트가 더 이상 단순한 사적자치 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방점을 두고,

국가나 지자체, 모두 일체가 되어 아파트 관리 비리가 척결되고,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도·감독의 강화를 통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제 집행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패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는 전화(관리비리 044-201-4867, 부실감리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69



주관적 건축심의를 사라지고,,,기준과 절차는 투명해지고

▶ 지자체 건축 심의기준…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사례 1,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사례 2, 주관적 심의) 00시 00구 건축심의시 위원 1인이 제기한 건축물 색채 변경 등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되고 결국 재심의를 받음

(사례 3, 도면 과다) 00시 00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배치는 심의 후 확정되고, 이에 따라 구조 및 전기 등 세부 상세도면이 만들어지나, 심의단계에서 이를 요구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함

(사례 4,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에서는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물 전면에 설치토록 심의하였으나, 건축 심의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음

앞으로 K씨, P씨와 같이 심의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도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심의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건축심의를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건축규제로 판단하고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9.30일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마련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 확대를 금지하였다.

법령을 초과하는 사항은 심의기준으로 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을 초과한 기준* 요구로 불만이 많아 앞으로는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부설주자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그간 심의대상을 “구청장등이 필요하여 심의 부여한 사항”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재·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하였다.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 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심의기준으로 통합·운영하여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지역별 여건이나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별로 정할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 심의 기준으로 통합·관리

그간에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나, 기준 재·개정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고(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 하고 시행시기 예측 등을 고려하여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고 즉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국토부에서 검토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소수 위원 의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진다.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심의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심의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다.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 된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 건축 및 구조계획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조경계획도만 제출, 조감도,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 생략

국토교통부는 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에 편중된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국토부장관 고시)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11월말)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3762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입법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14.12.25일 시행)에 따라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입법(행정)예고(기간: '14.10.2.~'14.10.2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내구성)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 구조계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국제기준 (21Mpa ≒ 210kgf/cm²)

(가변성)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하고,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토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수리 용이성) 사용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하였다.

②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일반 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보다, 업계 스스로 선택하는 비율을 높임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22.7%(163만 세대)에서 '13년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 멸실까지 건축후 평균사용 주택연수: 영국(77년), 미국(55년), 한국(27년)

그 동안은 내·외부 벽이 모든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하여 사용이 곤란하는 등 생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재건축 등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을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따라,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주거여건 변화

- 인구증가 속도 둔화: '70년(3,144만 명), '10년(4,799만 명), '30년(5,216만 명)
- 1, 2인가구 증가, 가구원수 감소: '90년(3.77명), '00년(3.12명), '10년(2.69명)
- 주택보급을 향상: '05년(98.3%), '10년(101.9%)
- 고층 아파트 현황
 - 20층 초과: 15,184동('10년), 19,099동('13년)
 - 30층 초과: 739동('10년), 1,440동('13년)
 - ※ '13년 현재 전체 아파트 동수: 127,443동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4.12.25.)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0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6 ~ 3367, 팩스 044-201-5684)

■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순환골재 품질인증 “수월” 부담 적고 간편해져

▶ 심사기준 합리화,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심사 받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기도 수월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10.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으로서, 적절한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한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되었다.

* 순환골재 생산비율(순환골재 생산량 / 건설폐기물 처리량)

- 도로공사용 30% 이상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10% 이상, 잔골재 20% 이상
-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30% 이상

그러나 생산비율은 품질기준과 무관하며, 오히려 인증업체에 처리시설의 보강 또는 증설을 강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결과 부적합 현황('13년)

운영실태 조사 건수: 351건
부적합 건수: 86건(생산비율 미달 50건, 품질미달 36건)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이미 교부된 품질인증서를 반납하는 절차를 삭제하는 등 품질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 품질인증서 재교부 대상

- 사업의 인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품질인증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에게 혐오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에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하여 친환경시설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 방진시설 예시

- 세륜시설, 살수시설, 저리시설의 방진덮개, 집진시설, 방진벽, 방진막 등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7



건설 분야 가치공학(VE) 경진대회 접수 시작

▶ 10.20.~10.31.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가치 향상 추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2014년 전국 가치공학(VE)* 경진대회」에 참가할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VE(Value Engineering)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조직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창출하는 기법

2008년에 처음 시작된 전국 가치공학(VE) 경진대회는 설계 VE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VE 시행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행사이다.

올해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례에 따라 전년도 최우수상 수상기관인 인천광역시가 주관한다.

참가자격은 '13.10.31(전년도 경진대회 접수마감일)부터 접수일 이전까지 VE를 실시하고, 설계자문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채택·승인된 건설분야(토목/건축/플랜트·환경분야) 프로젝트다. 각 발주청,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별로 2개 팀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11월 14일까지 심사(서류 및 설명회)를 거쳐 최우수상 2점 (공공1, 민간1)과 각 분야별 우수상을 선정하며, 12월3일에 수상작 발표회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10인 내외)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출품작의 VE 검토조직에 포함된 관련기관 소속자 등 관계자는 배제)한다.

※ 세부일정 및 평가기준 등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VE컨퍼런스(한국건설VE연구원 주관, 정책·논문·사례 발표 등)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어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관심과 참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1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10.21)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 완화,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7.24. ~ 9.2.)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대·복리시설 기준 완화 및 간소화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 예: 500세대 주택단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상이 되어야 함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 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주택의 급수·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 매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4종)을 세부적인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설치 종류를 간소화(4종→2종)하였다.

주택단지 내에는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수량을 완화(매세대당 1톤→0.5톤)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조례로 강화(설치기준의 1/2범위 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하였다.

②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였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복합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제가 없었던 때('82.6월 이전)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협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③ 기타 주택건설기준 등 정비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준용규정도 정비(총칙에서 일괄규정) 하였다.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단축을 위해, 인정기관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정하고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을 60일로 단축하여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공포 후 4개월 후)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369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 「건축사법」 개정안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을 마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하였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하여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건축사업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 입찰 등 각종 보증, 자금 융자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인간과 환경과 호흡하는 녹색건축이 눈앞에 !

▶ 제4회 녹색건축 한마당” ... 「녹색건축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민간·공공·학계 참여

전 세계적으로 건축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친환경·녹색건축의 생생한 현장이 10.29(수) ~ 11.1(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제4회 녹색건축 한마당”에서 펼쳐진다.

녹색건축 한마당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로, 녹색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 해외의 정책 등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민간·공공·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녹색건축과 함께하는 녹색생활(Green Value, Green Life)”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친환경건축 공모전(제7회), 녹색건축대전(제3회), 한국건축산업대전*(제9회) 등 관련 행사들도 한자리에서 열려 녹색건축의 최근 동향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를 주제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추진·개최하며, 10.29~11.1일 COEX에서 개최(녹색건축 관련 자재전시 등)

또한, 행사기간(10.29.~11.1.) 동안 열리는 녹색건축 관련 전시전을 통해 녹색건축 공모전 수상작, 녹색건축자재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UCC 공모전, 녹색건축 상담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해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공감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 첫째 날인 10월 29일 오전에는 시상식(녹색건축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작 등)과 더불어 녹색건축 유시시(UCC) 공모전, 녹색건축 정책 토론회, 녹색건축대전 발표 및 설명회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0월 30일과 31일에는 민간·공공·학계가 녹색건축 정보공유 및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공공정책, 민간기술 등 친환경·녹색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발표회(세미나)도 풍성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눈앞에 펼쳐지는 녹색건축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건축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신뢰성 있는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틀 마련

▶ 객관성 및 신뢰성 있는 평가절차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10월28일 오후 2시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로써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시공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평가제도가 요구되고, 특히 지자체의 경우 시공평가 제출률이 매우 저조하여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주청, 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태스크 포스팀)이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등을 공개하고,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보완하였다.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붕괴나 전도 등 건설사고 발생 시 감점항목을 추가하였고,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579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에서 구직기회 잡아요 !

▶ 건설기술자 경력 디비(DB)·구인정보 연계
‘통합 고용지원시스템’ 시범운영

- ▶ (활용예 1) 해외 △△국의 플랜트건설현장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A씨는 본인의 이력을 일일이 작성할 필요없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 경력신고된 자료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사에서 해당국가의 플랜트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구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입사지원 해 구직에 성공
- ▶ (활용예 2) □□용역회사는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현수교 등 특수교량 설계사업에 10년 이상 참여한 경력자를 구하기 어려웠으나, 시스템의 채용공고를 통해 손쉽게 검색하여 해당사업에 꼭 맞는 기술자를 채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건설관련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 고용지원 시스템(건설워크넷)’을 구축하고, 10월 15일부터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기술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건설관련업체에서는 인력정보 부족으로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협회별*로 분산된 기술인력정보를 하나로 모은 기술자 경력 디비(DB)**와 건설관련 업체의 구인정보를 연계한 통합 고용지원 시스템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내에 구축하였다.

* 경력관리기관(6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경력 디비(DB):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89년부터 건설기술자(약70만 명)의 경력, 학력, 자격, 근무처 등을 신고받아 관리중인 자료로 약2억 개 정보 축적

기존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건설관련 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건설관련업체 정보와 건설기술자의 경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다양한 채용 정보가 제공될 수 없었다.

건설기술자 통합 고용지원 시스템(건설워크넷)은 70만 건설기술자들의 약 2억 개에 달하는 방대한 경력 디비(DB)와 건설업체의 구인정보 디비(DB)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인·구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워크넷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말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 중인 건설기술자와 건설관련 업체 등은 건설워크넷 누리집 (<http://cworknet.koceia.or.kr>)에서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건설워크넷 개념도



□ 이용절차

- **건설기술자** : 회원가입→이력서등록(경력DB 활용)→정보제공 동의→업체 채용정보 검색→입사지원(온라인 이력서 발송)→구직
- **건설관련 업체** : 회원가입→채용공고→기술자 검색(등급, 참여사업종류, 업무내용 등)→입사제의(SMS, 이메일)→자체심사→채용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556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 인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를 2014년 10월 1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2.25%에서 연 2%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음.

* 부동산登記,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됨.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 변경 내역 >

구분	발행 금리	적용 일자(발행일 기준)
기존	연 2.25%	2013년 5월 1일 ~ 2014년 9월 30일
변경	연 2%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번 발행 금리 인하는 최근 한은 기준금리 인하(8월)와 유통 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주택 전세·분양 자금 저금리 대출 등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임.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지방 등록 시 매입) 발행 금리의 경우 '13년부터 연 2.5%에서 연 2%로 인하됨.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 금리 추이(단위 : %)

('13년 말) 3.471 → ('14. 1분기 말) 3.307 → ('14. 2분기 말) 3.000 → ('14. 7월 말) 2.870 → ('14. 8월 말) 2.865 → ('14. 9. 29일) 2.666

앞으로도 기재부·국토부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임.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10. 28.(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9호)

□ 예고기간 : 2014. 10. 28. ~ 2014. 12. 08.

□ 개정이유

사회여건 및 주민수요 변화에 맞춘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활용 및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시설 간에는 용도변경,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기능이 유사한 도시·군계획시설 간의 변경시 경미한 변경으로 반영(안 제25조제3항)

운동장, 체육시설 등 기능이 유사한 도시·군계획시설 간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 간의 용도전환 및 복합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10,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주택공급과

□ 입법예고일 : 2014. 10. 17.(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73호)

□ 예고기간 : 2014. 10. 17. ~ 2014. 11. 27.

□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하자가 복잡·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하는 한편,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현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안 제21조)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을 위해 감리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부정행위를 한 감리자에 대한 입찰제한 등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안 제26조)
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진 공공기관에 한정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기술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하자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감정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2조의14제2항제5호)

□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0, fax 044-201-5684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입법예고일 : 2014. 10. 16.(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260호, 1281호)

□ 예고기간 : 2014. 10. 16. ~ 2014. 11. 05.

□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접도구역 지정 제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접도구역에서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허용면적을 연면적 30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하고자 하기 위함

〈도로법 시행규칙〉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에 대하여 접도구역에서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코자 하기 위함

□ 주요내용

〈도로법 시행령〉

1. 접도구역 지정 제외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
2.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허용면적을 연면적 30 제곱미터로 확대

〈도로법 시행규칙〉

1.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제외
2. 농업시설 설치 확대 및 축대·옹벽 등의 안전시설 설치 허용

□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4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Fax 044-201-5591)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입법예고일 : 2014. 10. 16.(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64호)

□ 예고기간 : 2014. 10. 16. ~ 2014. 11. 05.

□ 개정이유

도로에 진출입로 개설을 제한하는 연결금지 구간을 축소하고 변속차로 설치길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의 명칭을 바꾸고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연결금지 구간 완화
2. 변속차로 설치기준 완화
3. 규칙 제명 변경

□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4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Fax 044-201-5591)

■ 자료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입법예고일 : 2014. 10. 1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37호)

□ 예고기간 : 2014. 10. 13. ~ 2014. 11. 03.

□ 개정이유

‘14.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건설 규모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하한은 폐지하고 상한은 5%p 완화하고,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며(다만, 정비계획 수립시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비율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 가능),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2014년 1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 자료 : 국토교통부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4호
- 기술분류 : 건축/철근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골조/기타 철근콘크리트
- 내용요약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창호나 문과 같은 사각개구부 모서리 주변벽체에는 온도 및 건조수축으로 인한 콘크리트 부피 변화로 균열이 발생하기 쉬워 사인장균열 방지철근을 배근하고 있으나, 시공이 까다롭고 계속적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응력분산곡면판을 개발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개구부의 단부 수직, 수평 보강 철근이 직교하는 코너에 설치하여 사인장균열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응력분산곡면판”은 중앙을 곡면으로 하여 직각으로 구부린 판재이며 벌집구조의 형태로 제작되어 크고 작은 구멍으로 콘크리트 충전이 용이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응력(재료에 압축, 비틀림 등 외력이 가했을 때 생기는 저항력)을 원활하게 전달, 분산하여 사인장균열을 방지한다.



《응력분산곡면판 형태》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모습》



《모서리부 사인장균열 발생 사례》



《신기술 적용시 사인장균열 방지》

실험결과 철근을 사용하는 기술보다 23~57% 사각개구부의 균열 감소효과가 있고 작업시간 17% 단축, 균열보수비 약 60~70% 절감이 가능하다.

응력분산설치판의 시공이 간편하고 주기적인 균열보수를 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미관 측면에서 향후 국내·외에서 건축현장에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재료특성(건조수축, 온도변형 등)에 의한 초기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

주열식 연속벽체를 이용한 저토피 토사구간 터널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쌍용건설(주)
	(주)건화
	(주)정토지오텍
	주식회사 성우지오텍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5호
- 기술분류 : 토목/터널/터널 구조물 설치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도심지 저토피 토사구간에서 대구경 강관보강그라우팅과 강지보재를 설치하여 터널 Roof를 형성하고 선시공된 주열식 연속벽체와 일체화함으로써 상부하중을 연속벽체에 전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저토피 토사터널공법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저토피(토피고 1D이하, D:터널폭) 토사구간에서 대구경 강관보강그라우팅과 강지보재를 설치하여 루프를 형성하고 주열식 연속벽체와 강지보재를 일체화함으로써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저토피 토사터널공법
- 주열식 연속벽체와 강지보재의 접합을 위한 연속벽체의 절취, 케미칼앵커 또는 브라켓 시스템을 이용한 연속벽체와 강지보재의 접합구조 시공법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4년 제11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실시설계적정성심의 2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1건
- 심의일자 : 2014. 10. 22.(수)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4-11-01	실시설계 (적정성)	양산 유산배수지 건설공사	· 위 치 : 양산시 유산동 산21-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배수지 1개소 (V=12,000m ³) 송수관로 L=0.84km (D800mm) 배수관로 L=0.84km (D800mm) · 사업비 : 158억원 (공사비 132, 보상비 등 26) · 사업기간 : 2015 ~ 2018년(4년)	양산시 (수도과)	조건부
2014-11-02	실시설계 (적정성)	통영 동호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통영시 동호동 31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배수펌프 396m ³ /분 (D1,000mm × 4대) 유수지 1개소 (V=4,000m ³) 관거개선 L=1.64km (D300~1,000mm) · 사업비 : 265억원 (공사비 242, 감리비 등 23) · 사업기간 : 2015 ~ 2017년(3년)	통영시 (치수 방재과)	조건부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11-03	창원 음식물 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창원시 (환경위생과)	조건부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4626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10월	계	39	61,686	57,923	3,763	6.10%	
	공사	토목	13	46,255	43,245	3,010	6.51%
		건축	4	7,951	7,566	385	4.85%
		기타	6	4,067	3,820	247	6.09%
	용역	5	2,088	1,999	89	4.23%	
	물품	11	1,325	1,293	32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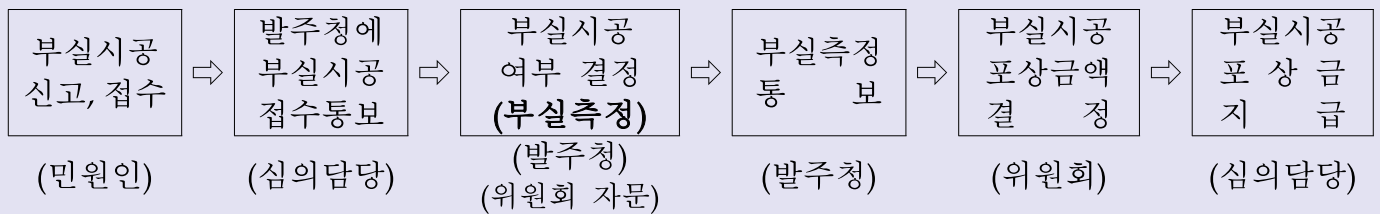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의를담당
(055)211-3548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I.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경상남도(www.gsnd.net) 및 건설정보(www.gnci.gsnd.net)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도급액 50억이상 건설공사

II. 처리절차



III. 포상금 지급기준

부실시공등급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포상금 지급기준
1 등급	벌점 3점	500만원 이하
2 등급	벌점 2점	300만원 이하
3 등급	벌점 1점	100만원 이하
해당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 부실벌점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IV.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함)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4622~4626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4619
- 신고서식 : 상기 홈페이지에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관련 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수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http://211.53.241.200>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팀당
(055)211-4626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rudgh123@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